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계획(안)

I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외부인 출입 금지, 종사자 관리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요양시설에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금지 지침 시행
 - * 외부인 출입자제(1.28) → 면회제한(2.24) → 면회금지(3.13~)
- 전환 상황 및 고강도 대책 지속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장기적 관리
 - 특히,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접촉 면회 허용 필요
 -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20.6.26, 중대본)

II 기본 방향

- (기본방향) ·외 코로나19 발생현황, 위기경보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 마련
 -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 실시
 - 향후 정책환경 변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수준 검토
- (실시방안) 지역별 발생률 등에 따라 시도(시군)가 면회 실시 여부 자체 판단 가능
 - 기관운영자는 필요한 경우*에 환자와 면회객의 감염노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
 - *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 자체 판단
 - 면회를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비접촉 면회 실시
 - * 플라스틱 칸막이 또는 야외 등 <참고>

III 면회객 관리방안

□ 사전준비

①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서식1]의 <면회신청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면회 일시·인원 사전 확인 및 주의사항 안내

※ 면회 시 주의사항 안내

1. 마스크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 전 방문자 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3. 면회 예약 시 면회객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5.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6. 어르신과는 공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 등으로 분리된 공간(실내·야외 모두)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악수·쓰다듬기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야외의 경우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면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② 면회장소 마련

- 원칙적으로 입실 면회는 금지하며(임종·와상은 허용), 내 의
면회공간* 설치 및 야외 면회장소 마련하여 면회 실시
- 여건에 따라 ·시간적·인적 제한을 통해 감염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 마련
- * 시설의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으로 생활실 등과 분리되어 어르신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장소(별도공간에서도 플라스틱 칸막이 또는 투명 비닐로 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비접촉 면회 예시】 건물 외벽의 유리문 및 야외 투명 비닐 칸막이 활용



③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위생 및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시설 출입
 - * 손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시설 입구 비치, 마스크·비닐장갑 미착용 및 손소독제 미사용 시 출입제한

④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 위험요인 확인 시 14일 이후 면회재신청



□ 면회 중 준수사항

- ① (면회거리) 면회객과 어르신은 투명 차단막 설치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또는 야외*에 면회공간 마련

* 투명칸막이 또는 비닐로 차단, 칸막이 설치 등 어려운 경우 2m 이상 거리유지

- ② (공기노출)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금지

- ③ (신체접촉)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 비닐막 설치 및 비닐로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포옹, 손잡기 등(아래 브리질 사례)



【예외 사례】

- (임종환자) 시설 내 다른 환자가 없는 1인실 또는 별도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출입구↔면회공간은 동선분리, 면회객은 개인보호구* 착용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등

- (와상환자) 임종환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면회 실시

□ 사후관리

-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실시
- ② 및 환기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③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IV **어르신 관리방안**

□ 사전준비

- 어르신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 사후관리

- 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V **시설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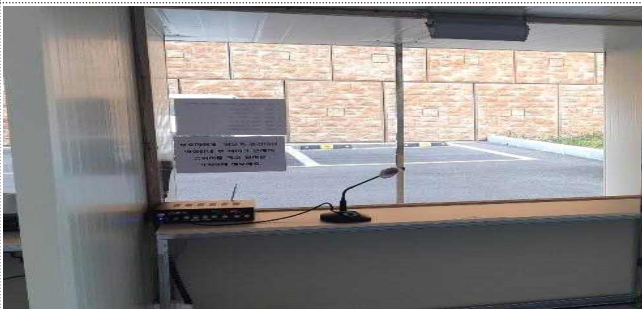
□ 시설 관리

- ①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 관련 홍보물 시설 내 주요 장소 부착(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자료 활용)
- ② 자주 닿는 곳(버튼, 출입문 손잡이, 테이블, 의자 등) 공용 물건은 매일 수시 소독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5판)」 붙임6 사회복지시설 소독안내 참고
- ③ 매일 2회 이상 시설 전체 환기 실시
- ④ 기관 종사자 면회객 관리 관련 사전 교육 실시
- ⑤ 면회객이 사용한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수거를 위해 실외에 별도 쓰레기통 마련

【야외형】



실외 비닐 설치형



실외 칸막이 설치형, 마이크 사용

【실내형】



출입문형, 인터폰 사용



출입문형, 확성기 사용



실내 유리창 설치형



실내 아크릴창 설치형

서식1

노인요양시설 면회신청서(예시)

면회 신청자	성명		어르신 성명	
	연락처		어르신과의 관계	
면회희망일		2020. . .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객께서는 아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확인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면회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구분	체크리스트	있음	없음
1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
2	가족이나 동거인 중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	☐
3	가족이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습니까?	☐	☐
4	최근 14일 이내에 다음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습니까? * 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감기)	☐	☐
5	가족이나 동거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있습니까? * 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감기)	☐	☐

※ 이 신청서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신청인 000 (서명)

단원요양원장 귀하

※ 동 양식은 지자체 및 시설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 다만, 위의 5개 체크리스트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야 함

※ 면회객은 모두 사전에 신청서 작성·제출(1인당 신청서 1부)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예시)

[illegible]